

변경 대비표

□ 대상 펀드명: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40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
□ 변경 사항:

- (1)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집합투자기구 변동성 업데이트
- (2)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 예정일: 2018년 12월 20일

□ 변경 내용: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			
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4 등급(보통 위험)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5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3d3d3;"> <th style="width: 50%;">표준편차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투자위험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6.12%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 등급 (보통 위험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표준편차	투자위험등급	<u>6.12%</u>	4 등급 (보통 위험)
표준편차	투자위험등급					
<u>6.12%</u>	4 등급 (보통 위험)		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공제제도 :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(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일 경우 15%) 분리과세한도 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단,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 이 분리과세 적용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공제제도 :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(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일 경우 15%) - (신설)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 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 한도 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) 분리과세한도 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 과세 적용 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 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 하는 연금소득				

트러스톤자산운용(주)



트러스톤자산운용